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 통보(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)

1. 은평구 건축과-26462(2022. 9. 16.)호 및 정비사업신속추진단-6715(2023. 5. 2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구에서 요청한 은평구 불광동 19-3번지 일대 「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」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건에 관해 제반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불임과 같이 심의의결 보완서를 통보하니, 승인관청인 귀 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기 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해당 사업

접수번호	사업명	사업자	대행자
2022-83	불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	(주)하나자산신탁	(주)우리종합기술

나. 안내 사항

- 1) 사업자는 심의의결 보완서의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의2 서식 참조)와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할 것
- 2)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조)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 및 그 기록사항 유지 등 관리하고,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·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승인관청에 알리도록 할 것
- 3) 사업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
- 4)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교통영향평가정보시스템(<https://tia.molit.go.kr>)에 등록하도록 할 것

5)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·관리·운영하도록 하고,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·관리·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것

붙임: 1. 심의의결 종합개선안도 1부.

2. 심의의결 보완서 4부(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및 교통행정과, 사업자, 대행자 각 1부)
(별도 송부)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은평구청장(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), 은평구청장(교통행정과장)

주무관 **문한성** 교통수요관리 **김종민** 교통정책과장 05/30
팀장 **이창석**

협조자

시행 교통정책과-8775 (2023. 5. 30.) 접수 ()

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소문청사 1동 7층 / <http://www.seoul.go.kr>

전화 02-2133-2227 /전송 02-2133-1449 / moon29@seoul.go.kr / 부분공개(6)